



building**SMART**KOREA
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사)빌딩스마트협회

정 관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 정관

제정 : 2008.04.25.

개정 : 2009.04.1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빌딩스마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buildingSMART Korea'(약칭 BSK)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한국 AEC/FM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 Facility Management) 분야에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이라 한다) 및 첨단IT의 연구, 보급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업계 대표기관으로서 해당산업에서의 응용과 각종 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통하여 국내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국제활동에의 참여 및 공헌을 통하여 해당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본 협회는 영국 Surrey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비영리 BIM표준 단체인 buildingSMART International (이전의 IAI International) 로부터 한국에서의 buildingSMART 명칭 및 트레이드마크 등의 사용허락을 받아 대외적으로는 buildingSMART 한국지역연맹(Korea Regional Alliance)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buildingSMART가 정하여 국제표준이 된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SO/PAS 16739 : 이하 'IFC'라 한다.)와 IFD(Information Framework Dictionary), IDM(Information Delivery Manual), MVD(Multi View Definitions) 등 buildingSMART 공개표준의 개발 및 확산활동에 참여하며, 대내적으로는 buildingSMART 공개표준과 관련기술의 보급 및 응용확산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따르며 지회설치 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buildingSMART 및 BIM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2. buildingSMART 및 BIM 관련 요소 및 응용기술 개발사업
3. buildingSMART 및 BIM 발전을 위한 기준마련 및 정책건의
4. buildingSMART 및 BIM 관련 자료수집, 개발, 보급사업
5. buildingSMART 및 BIM 관련 교육, 홍보, 자문
6. 국내외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7. 국내외 세미나, 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및 참가
8. 뉴스레터, 동향지 등의 발간
9. 기타 협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여기서 "BIM기술"이라 함은 BIM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입방법론, 조직운영기술, 표준기술, 콘텐츠 구축기술, IT활용기술, 정보공유 및 교환기술, 데이터 관리 및 재활용기술 등 제반기술을 말하며 "사업"이라 함은 본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범위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중 적어도 어느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업체, 연구소, 학교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건설업
2. 설계업 또는 감리업
3. 부동산 개발업 또는 부동산 관리업
4. 건축 설비업
5. 위 각호의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혹은 라이선스업
6. 기타 건설 산업에 관한 컨설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회원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4조의 사업에 동참할 뜻과 능력을 가진 법인 혹은 개인.

2. 준 회원

제4조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혹은 개인 및 학생

3. 특별회원

정회원이나 준회원은 아니나 협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내외 인사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발표회 등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운영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협회관련업무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을 사무국에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가입 절차)

1.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법인회원(기업, 연구기관)은 대표 혹은 부서장 명의로 가입하고 개인회원(기업 및 연구소의 개인 또는 대학교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복귀, 탈퇴, 자격상실 등)

1. 회비를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 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3.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 년이 경과한 회원에 대해서 회원자격의 상실을 고지할 수 있다.

4.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려 할 경우 탈퇴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5.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제7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지 않게 된 때
 - ② 회원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 ③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가 정한 활동을 방치하거나 사업계획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2항 3호, 4호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7. 협회의 탈퇴를 신청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이나 협회 자산에 대한 반환, 환수 등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0조(임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명 이상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 포함)
2.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를 위하여 회장은 부회장 선출시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2. 부회부회장은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의결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전임 회장,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임원선출을 위한 절차가 특별한 이유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 차기임원의 선임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7.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 자격도 동시에 상실한다.
8.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본회의 징계를 받은 자

제14조(이사회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5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 21조에 의한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집행 후 이사회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임원의 추천, 재산관리 및 처분의 심의
7. 기타 주요사항

제16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부회장 및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4. 이사회 구성원은 그 1/3이상의 찬성을 얻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15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임원의 수 및 찬성투표의 수에는 위임장에 의한 출석자수 및 투표자수를 포함한다.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고문 및 명예회장)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 ④ 협회의 해산
- ⑤ 기타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이 요구된 때
 - ② 재적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등 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총 정회원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회원의 수 및 찬성투표의 수에는 위임장에 의한 출석자수 및 투표자수를 포함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장 또는 회원 자신 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 또는 참석회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부서 및 부설기관

제23조(사무국, 부서 및 부설기관의 설치)

1.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부서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정한다.
 - ① 연구개발부 : 본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업무수행
 - ② 사업부 : 본 정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업무수행
5.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설기관별 운영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다.
 - ① 기술연구소
 - ② 정보센터

제2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협회는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이에 대신하는 서류 및 장부를 갖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정관
2. 임원명부
3. 사무국 직원명부
4. 재산목록
5. 수입, 수지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총회, 이사회 및 지부에 관한 서류

제6장 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설치)

1. 협회는 협회활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조직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하며, 각 위원회의 세부 운영은 해당 위원회에 위임한다.

제7장 회계 및 자산

제26조(회계구분 및 회계연도)

1.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 및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3. 특별회비, 찬조금, 출연금 및 현물 또는 기부금품
4. 기타 수익

제28조(자산의 관리)

1. 협회의 자산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이 관리하며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사무국이 집행한다.
2.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그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3. 협회의 회계연도 수익은 다음 회계년도 사업자산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특별 분담금)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용의 충당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 분담금을 정할 수 있다.

1. 협회활동에 관한 행사, 출판 및 홍보활동 비용
2. 기타 이사회에서 협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결한 특별비용

제30조(임원 등의 보수)

협회의 상임임원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비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1.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2.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③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 정회원 10분의 1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와 제21조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총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해산시 재산귀속)

협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 협회와 유사한 취지의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35조(서면 결의 또는 대리인 결의)

회장은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를 서면결의 또는 대리인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36조(적용 법령)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37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부 칙

제38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